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형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7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6.

발 의 자 : 박형수 · 박성민 · 김정재
조배숙 · 서지영 · 최수진
박수영 · 서천호 · 최은석
이성권 · 김기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에 9인의 위원을 두도록 하면서 상임위원은 1인을 두도록 함.

그런데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들로 인해 민주주의의 요체인 투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. 이는 선거관리위원들의 비상근 구조로 인한 업무 이해도 부족과 상시감독 기능 및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음.

이에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고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에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의 내부 인사, 감사, 선거관리, 정치자금 등 주요사무에 대한 상시 보고 요구권, 자료제출 요구권, 현장점검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,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6조 및 제16조).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인 상임위원 1인을 두고,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2인의 상임위원을 둔다.

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상임위원별로 선거 관리와 관련한 정책, 운영 및 감사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
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각 1인으로 하되, 호선으로 선출되는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은 재직기간이 가장 긴 위원으로 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.

1.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
2. 국회가 선출한 위원
3.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

④ 호선으로 선출되는 위원장이 상임위원이 아닌 경우, 위원장과 제

3항 각 호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종전의 상임위원은 지위를 상실하며,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된 때에는 그 위원은 호선된 때에 상임위원이 된다.

제16조의 제목 중 “指示・協助要求”를 “보고・협조요구 및 지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第1項 및 第2項의 規正에 의하여 指示를 받거나 協助要求를 받은 行政機關”를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고・자료제출・협조 요구를 받거나 지시를 받은 소속 사무처의 직원 또는 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, 감사, 예산·결산 및 선거관리 등 소속 사무처의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6條(常任委員) ① <u>中央選舉管理委員會와 市・道選舉管理委員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각 1人의 常任委員을 둔다.</u> ② <u>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.</u> <신 설>	第6條(常任委員) ①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인 상임위원 1인을 두고,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2인의 상임위원을 둔다.</u> ②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상임위원별로 선거 관리와 관련한 정책, 운영 및 감사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</u> ③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각 1인으로 하되, 호선으로 선출되는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은 재직기간이 가장 긴 위원으로 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.</u> <u>1.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</u> <u>2. 국회가 선출한 위원</u> <u>3.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</u>

③ 市・道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당해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 選舉 및 政黨事務에 관한 識見이 풍부한 者중에서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指名하되 常任委員으로서의 勤務上限은 60歲로 한다.

1. ~ 3. (생략)

第16條(選舉事務등에 대한 指示
・ 協助要求) <신설>

④ 호선으로 선출되는 위원장이 상임위원이 아닌 경우, 위원장과 제3항 각 호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종전의 상임위원은 지위를 상실하며,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된 때에는 그 위원은 호선된 때에 상임위원이 된다.

<삭제>

<삭제>

第16條(選舉事務등에 대한 보고
・ 협조요구 및 지시)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, 감사, 예산·결산 및 선거관리 등 소속 사무처의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.

① · ② (생략) ③ <u>第1項 및 第2項의 規正에 의하여 指示를 받거나 協助要求를 받은 行政機關 · 公共團體</u> 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.	② · ③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 ④ <u>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고 · 자료제출 · 협조 요구를 받거나 지시를 받은 소속 사무처의 직원 또는 행정기관-</u> ----- -----.
--	--